

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별표 2 제1호다목5)를 7)로 하고, 같은 목에 5) 및 6)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
6)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

별표 2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지 않은 경우	법 제33조제1항제1호	300	300	300
나.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	법 제33조제1항제2호	150	225	300
다.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3조제2항제1호	100	100	100

라.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3조제2항제1호	50	75	100
마.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3조제2항제1호, 제1호의2	30	50	100
바.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하거나 이를 홍보한 경우	법 제33조제2항제2호	50	75	100
사. 동물실험시설 운영자, 관리자, 또는 실험동물공급자가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33조제2항제3호	30	50	100
아. 법 제13조제3호, 제18조제2항·제3항, 제19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3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	50	75	100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

태료를 부과·징수하는 경우에는 [별표 2]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